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28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김태선 · 윤종균 · 한준호
김주영 · 강득구 · 강경숙
김병주 · 진성준 · 김영환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인 이직 실태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지급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 1년 미만의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과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

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규모·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용안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직전 3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 등 고용·노무제공 형태나 이직 사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의 적용요건이 되는 비율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다.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의 적용대상은 사업의 규모·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7년 보험연도부터 대규모 사업을 시작으로 보험연도별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

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및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제13조제4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액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격자”라 한다)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6.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 고용기간 또는 고용·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및 보수총액 등 사업의 규모, 사업의 종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기간 및 고용·노무제공 형태 등 고용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보험연도에 사업주가 제13조제4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보험연도에는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또는 보수총액 등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2028년 보험연도 이후에는 사업의 규모, 사업의 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2030년 보험연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연도부터는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실업급여 보험료의 특</u> <u>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u> <u>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u> <u>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u> <u>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다</u> <u>음 각 호의 비율이 각각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u> <u>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제</u> <u>13조제4항(제48조의2제10항제2</u> <u>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u> <u>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u> <u>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u> <u>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u> <u>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u> <u>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을</u> <u>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u>따라 증액한 금액으로 한다.</u> <u>1.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u> <u>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u> <u>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의5제</u> <u>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u>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격자”라 한다)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
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
무제공자

6.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의 이직사유, 고용기간 또는
고용·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
자 수 및 보수총액 등 사업의
규모, 사업의 종류, 근로자·예
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기간
및 고용·노무제공 형태 등 고
용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